



제 419회 국회 (임 시 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853호)

2024. 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 재 금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2
IV. 검토의견	3
1. 한국임업진흥원의 무상양여 등 대상에 국유임산물을 포함	3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이만회의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4. 10. 23.

다. 회 부 일 : 2024. 10. 24.

II. 제안이유

목재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 탄소중립을 위한 방안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목재자급률은 평균 15% 내외로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이에 대응하여 산림청은 공공건축물 분야에 목조화 확대를 위해 ‘탄소중립을 위한 목조건축화 선언’(’23.8.25, 산림청장)을 하였으며, 산림 분야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고층 목구조물 실현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이에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이 산림과학 기술분야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관리를 선도해 나가고, 국가 NDC 달성 및 목재 자급률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국유임산물을 한국임업진흥원이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한국임업진흥원의 운영지원을 위한 사항을 보완함(안 제29조의3제 3항).

IV. 검토의견

1. 한국임업진흥원의 무상양여 등 대상에 국유임산물을 포함
(안 제29조의3제3항)

개정안은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 임산물을 한국임업진흥원에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9조의3(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제29조의3(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①·②(생략)	①·②(현행과 같음)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 및 <u>물품</u> 한국임업진흥원에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 ----- ----- ----- ----- ----- <u>「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u> ----- ----- <u>물품, 국유임산물</u> 을 ----- -----.
④·⑤(생략)	④·⑤(현행과 같음)

‘국유임산물’이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5호¹⁾에 따른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말하는데, 임산물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²⁾에 따라 산림에서 생산되는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産物), 그 밖의 조경수(造景樹), 분재수(盆栽樹) 등이 해당됨.

국유임산물은 「국유림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³⁾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데, 최근 4년간 무상양여 현황을 살펴보면, 주로 연료 등 자가소비용으로 나타난바, 국유임산물 대부분은 저부가가치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이해됨.

-
- 1) 제21조(국유림의 대부등)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전국유림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준보전국유림을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보전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5.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이하 “국유임산물”이라 한다)의 매수자가 그 국유임산물을 채취·가공 또는 운반하는 시설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임산물(林産物)”이란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産物), 그 밖의 조경수(造景樹), 분재수(盆栽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⑤ 법 제2조제7호에서 “그 밖의 조경수, 분재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경수·분재수
 2. 가지·꽃·열매·생잎·장작·톱밥·나무조각 등 수목의 일부분
 3. 대나무류·초본류·덩굴류·이끼류
 4. 산림버섯·폐
 5. 숯(톱밥숯을 포함한다)·수액(수목 또는 대나무를 태워서 얻는 응축액을 포함한다)
 6. 합판·단판·섬유판(fiberboard)·집성재·성형재·마루판·목재펠릿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목재제품
- 3) 제29조(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재해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한 자재의 공급
 2. 재해를 입은 자에게 재해복구에 필요한 건축자재 또는 임산연료(林産燃料)의 공급
 3. 용재(用材)가치가 없는 숲가꾸기 산물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등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연료용 등 자가소비용으로 공급하려는 경우

【 최근 4년간 국유임산물(목재) 무상양여 현황 】

(단위 : m³)

구분	2020	2021	2022	2023	비고
합 계	483	244	213	546	
재해예방 복구용	-	-	-	1	·백두대간수목원 복구 지원
재해국민 지원용	-	-	-	-	
연료 등 자가소비용	483	244	213	545	·떨감나누어주기, ·지역주민 소득지원용 산림 바이오매스 지원

자료 : 산림청

그런데, 이 법 제29조의24)에 설립 근거를 두는 한국임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제품의 안전성 평가, 목재제품의 인증 업무,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검사, 산림분야 연구개발(R&D) 및 연구개발을 위한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바, 국산목재를 고부가가치용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진흥원에 관련 연구에 필요한 목재를 무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진흥원에 국유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산목재를 산림분야 과학기술 발전 등에 사용하여 그 가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되고, 산림청도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임.

4) 제29조의2(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 ① 산림청장은 임업인의 산림경영정보 및 임산물 생산 유통·정보 지원 등을 통한 산림소득 증대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을 설립한다.

② 한국임업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에서 볼 때, 국유임산물의 처분 원칙에 다소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임.

국유임산물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5)에 따라 경쟁입찰 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6)에 따른 공익사업

-
- 5) 제27조(국유임산물의 매각) ① 산림청장은 국유임산물을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임산물을 그 연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 국내 목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목재의 용도 및 매수인의 자격을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
 4. 경쟁입찰에 의할 경우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산림청장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국유임산물의 매수인에게 그 임산물의 반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임산물을 매각하는 경우
 6. 수출산업을 위한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7.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에 매각하는 경우
 8. 그 밖에 목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6)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궤도(軌道)·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砂防)·방풍(防風)·방화(防火)·방조(防潮)·방수(防水)·저수지·용수로·배수로·석유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국내 목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목재의 용도 및 매수인의 자격을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 등에 제한적으로 수의계약이 허용되고 있음.

따라서 진흥원에 국유임산물을 대부·사용·수익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모순·충돌 문제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둘째,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에 관한 사항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바, 해당 법률에서 개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⁷⁾

같은 법 제29조에서는 국유임산물의 활용을 위하여 무상양여 대상으로 재해예방 및 복구 지원, 재해피해 국민에 대한 지원, 용재(用材) 가치가 없는 임산물의 연료용 등 자가소비용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바, 목재와 같은 국유임산물은 재해복구 지원용으로 제한되고 있음.

반면, 이 법은 임업인의 권익 증진 및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촌지역 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국유임산물을 무상양여하도록 하는 사항은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7) 개정안과 유사한 입법취지를 담은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54, 2024.10.24. 회부)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어려운 측면이 있음.

셋째, 개정안을 수용하게 된다면, ‘국유임산물’은 이 법에서 정의를 따로 하고 있지 않아 다른 법률의 정의를 인용하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유임산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23